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학생생활교육 전문인력>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학생생활교육 전문인력)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채용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당업무
학교정책과	학생생활교육 전문인력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상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생활교육 관련 법령·제도 관련 현장 적용 및 사안 대응○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그 밖에 담당 부서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 근무부서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세부내용은 아래 표 내용 참고
- 응시 연령: 18세 이상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단, 남성은 군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자격요건 (자격요건1과 자격요건2의 각각 하나 이상을 동시에 만족)

분야	자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학생생활 교육전문인력 (일반임기제 6급상당)	자격요건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교육학, 상담학·심리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법학)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 소지자 3.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div> ※ 상담·심리 관련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자격에 한하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발급 자격증 -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자격증 -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자격증(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급) -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div>
	자격요건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학생생활교육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학생생활교육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학생생활 교육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div> * 관련분야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 경력: 초·중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며 학생생활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교육행정 경력: 교육청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학생생활교육 관련 정책·제도 운영, 학교 지원 및 사안 대응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상담·학생지원 경력: 학생·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위기 학생 지원, 갈등 조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div>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중심 생활교육(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div> * 관계중심 생활교육(회복적 생활교육) 교육·연수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 (연수 기관의 예: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리피스 평화교육연구소, 비폭력평화물결 등 회복적 생활교육 교육·연수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행정안전부장관 발급)

※ 경력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주 40시간 비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시간제일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 자격요건이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이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적격성을 평가하며,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가지)

- | | |
|--------------------|----------------|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2년

나.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 예정 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

임용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일반임기제 6급(상당)	86,606	<u>57,708</u>	연봉 외 각종 수당 별도 (2027년 연봉한계액 변동 사항 적용 예정)

※ 연봉 외 급여(수당)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임기제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라 본인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공고일: 2026. 10. 30.(금)
- 공고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누리집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9.(월) ~ 2026. 11.11.(수)	2026. 11. 18.(수)	2026. 11. 23.(월)	2026. 12. 8.(화)	2026. 12. 1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합격자 공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https://www.sje.go.kr>, 새소식/고시공고)에 게시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누리집에 게시

다.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11. 9.(월) ~2026. 11. 11.(수), 3일간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3층)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6.11.11.)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발송 후 담당자(☎ 044-320-3123)에게 도착 여부 확인 권장
- ※ 대리접수 가능. 단,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할 것

❖ 우편 발송 주소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앞
 〈봉투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응시분야:학생생활교육 전문인력] 채용서류 재중” 명기〉

라. 응시수수료: 7,000원

- 직접방문: 응시수수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본청 내 1층 은행에 납부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3층)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 우편접수: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
 - ※ [계좌번호] 농협 301-0109-6077-91(예금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금자명: 본인 성명)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6.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내용
공통 (필수)	1. 제출 서류 목록표	• 제출 서류 제출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
	2. 응시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기재 • 응시수수료 영수증 및 이체 결과 조회 출력물 첨부 • E-mail과 휴대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구분	제출 서류	내용
	3. 이력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제외)
	4. 자기소개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에 따라 A4 2매 분량으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에 따라 A4 4매 분량으로 작성 (임용 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6.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초본 열람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제출 부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제출
	8.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시간), 직위(직급), 담당 직무, 상근 또는 비상근직(주당 근무시간 명시)을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업자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분야 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와 서류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 분야 경력 사항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 여부 확인용으로 미가입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증명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10.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요건 란에 해당여부 표시하여 제출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위 수여 일자 또는 졸업 일자를 기준으로 함
	1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구분	제출 서류	내용
선택 (해당자)	13.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14. 위임장	• 응시원서 대리 접수인 경우(서명 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하실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경력사항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 면접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임용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경력증명이 첨부(확인)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반환청구서 제출)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재공고 시 응시자(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 위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같음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조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044-320-3123)